

##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 (참조) 교통안전관리자 제 목 영상기록장치 관련 법령 공포 안내

- 1. 전세연 제2019-140호(2019.10.01)와 관련입니다
- 2.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 의무화와 차내 안내표지 및 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장치의 설치기준, 방법 등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3. 아울러 영상기록장치에는 블랙박스영상장치를 포함하며, 전세버스 업종의 경우 시행령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붙 임 : 전자관보 사본 1부. [끝]

##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



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(기획관리부) 박호동

전무이사 박태환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19-248 호 ( 2019.10.01 )접수 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(교통회관 11층) 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

( / http://www.tourbus.or.k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